

# 공 고

아산시 공고 제 2020 - 2021호

제 목 : 개별공시지가 정정·공시 사항 공고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·공시 등), 제12조(개별공시지가의 정정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)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
개별공시지가 정정·결정 내역

토지소재지	정정기준연도	비 고
풍기동 221-1	2015. 1. 1. ~ 2019. 1. 1.	
송악면 평촌리 8-2	2015. 1. 1.	
인주면 밀두리 269-3	2015. 1. 1.	
선장면 신동리 140-19	2015. 1. 1.	

※ 세부내역은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비치 및 개별통지 되며, 토지소유자 등은 위 정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020. 7. 27.

아 산 시 장

